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

##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920

제출년월일 : 2009. 11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#### 1. 개정이유

- 가. 관광도시 인천의 국제인지도 향상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증진 도모를 위하여 공사의 수권자본금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,
- 나. 「지방공기업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, 그 밖에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공사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수권자본금 확대.(안 제4조)
- 나. 「지방공기업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장·이사·감사의 임기를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, 사장·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조항 정비.(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)
- 다. 공사의 사업에 교육분야와 관광숙박업을 추가함.(안 제19조)
- 라. 손익금의 처리 중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.(안 제26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##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- 제1조 중 "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"을 "「지방공기업법」"으로, "인천광역시관광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"를 "인천광역시관광공사"로 한다.
- 제2조 중 "공사"를 "인천광역시관광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"로 한다.
- 제4조제1항 중 "3,600억원"을 "6,500억원"으로 한다.
- 제6조제2항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, "「지방공기업법시행령」"을 "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"으로 한다.
- 제7조제2항 본문 중 "연임"을 "1년을 단위로 연임"으로 한다.
- 제8조제1항 중 "「인천광역시공사·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」에 의거 추천된 자"를 "영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"로 한다.
- 제9조제1항 중 "포함하고, 사외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3분의1미 만으로 한다"를 "포함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 과 같이 한다.
  -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.

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9조제1항제3호마목 중 "훈련"을 "교육훈련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1호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, "법"을 "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"으로 하여 제12호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와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관광숙박업

제20조제1항 중 "기타"를 "그 밖의"로 한다.

제25조 제목 중 "계리"를 "회계처리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"계리"를 각각 "회계처리"로 한다.

제26조제1항제3호 중 "부채상환, 사업준비 등을 위한"을 "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채상환·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으로"로 하여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3. 이익배당(시 일반회계에 납입)

제5조제1항제14호·제19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·제 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·제34조제2항제4호 중 "기타" 를 각각 "그 밖에"로 한다.

제11조 각 호외의 부분·제19조제1항제11호(종전의 제10호)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각호"를 각각 "각 호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	개	정	안
제1조 (목적) 이 조리 법」(이하 "법"이리 규정에 의하여 인 (이하 "공사"라 한다 에 관하여 필요한 목적으로 한다.	- 한다) 제49조의 [천광역시관광공사 <u>가)</u> 의 설립과 운영	법 <u>」</u> - 			
제2조 (법인격) <u>공사</u> 는	: 법인으로 한다.				∮시관광공사(이 
제4조 (자본금) ① 중 은 <u>3,600억원</u> 으로 (이하 "시"라 한다) 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(생략)	하고, 인천광역시 가 전액을 현금 또	<u>6,5</u> 		 	
제5조 (정관) ① 공사 과 같은 사항을 기기 1.~13. (생략) 14. <u>기타</u> 필요한 사 ② (생략)	해하여야 한다.	1.~13 14. <u>ユ</u>	 3. (현행고	 가 같음) 	
제6조 (등기) ① (생략 ② 공사의 설립등 관하여 필요한 사형 <u>법시행령</u> (이하 "여 규정하는 바에 따른	기와 <u>기타</u> 등기에 항은 <u>「지방공기업</u> 영"이라 한다)이	2			그 밖에 「지방공기업
제7조 (임원) ① (생릭 ② 사장·이사·감사의 하되, <u>연임</u> 할 수 있 임원의 임기는 그 기	비 임기는 3년으로 J다. 다만, 당연직	②		(현행과  <u>-</u> 위로 연	

현	행		7	H	정	안
<u>시공사·공단사장</u>	장은 시장이 임면하 : 때에는 <u>「인천광역</u> 추천위원회설치운역 <u>*천된 자</u> 중에서 역	명 명 3제 임 <u>추천</u> 		따른 	 임원추 	 <u>영</u> 제56조의 천위원회에서
에는 시의 실·국정 분야와 관광분야	사는 상임이사와 변 분하되, 비상임 이사 장과 세무 또는 회기 전문가를 <u>포함하고</u> 는 이사정수의 3분의	다 레 <u>'-,</u>				
② 이사는 시장의	] 승인을 얻어 사건 만, 정관에서 규정학 러하지 아니하다.	화 <u>추</u> 천 		중에서	사장 <b>º</b>	천위원회에서 <u>  임명한다.</u> 
해당 하는 경우에	<u>각호</u> 의 어느 하나여 는 임기가 만료된 역 후임자가 임명될 대	해) 임 레		<u>각</u> 	<u> </u>	
장이 된다. 다만,된 사항에 대하여순위에 따른 상임집하고 그 의장여	기를 소집하고 그 의 사장의 신분과 관련 여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의 이 되며 상임이사기 임 비상임이사가 이	의 <u>&lt;</u> 삭 발 발 나			· ② (₹	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	
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⑥ (생략)	⑥ (현행과 같음)
제19조 (사업) ① 공사에서 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. 1. 관광자원개발과 운영 사업가.~다. (생략)라. <u>기타</u> 관광객 이용 편익시설 개발2. 특수관광 시설개발과 운영 사업가.~다. (생략)라. <u>기타</u> 문화예술등과 연계한 관광여가 시설	 1 가.~다. (현행과 같음) 라. <u>그 밖에</u> 2 가.~다. (현행과 같음)
3. 관광진흥사업 가.~라. (생략) 마. 관광인력의 양성과 <u>훈련</u> 바. (생략)	3 가.~라. (현행과 같음) 마 <u>교육훈련</u> 바. (현행과 같음) <u>4. 관광숙박업</u>
4. 국제회의업 5. 체육시설업 6. 항공관련 사업 7. 남북관광교류에 관한 사업과 협력·지원 8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	5 6 7 8 9
9.     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        10.       위 각호의 업무와 관련한 설계용역과 감리 등의 업무         11.       기타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	10.

현	행	개 정 안
항 <u>각호</u> 의 어느 하 무를 효율적으로 <sup>4</sup> 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에 출자	시 의결을 거쳐 제1 나나에 해당하는 업 수행하기 위하여 시 지방자치단체외에 할 수 있다. 이 경 제47조의2 규정에	② <u>각 호</u>
는 국가·지방자치당	난체 또는 <u>기타</u> 위 행할 수 있으며, 이	제20조 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① <u>그 밖의</u> -  ②・③ (현행과 같음)
항의 규정에 의하 지방자치단체의 시 우 국가 또는 지방 하여야 하는 경비는 1.·2. (생략) 3. <u>기타</u> 성질상 공 없는 경비 ② (생략) ③ <u>기타</u> 사업자의	여 공사가 국가나 업을 대행하는 경 자치단체에서 부담 다음과 같다. 사에서 부담할 수	제24조 (경비의 부담) ①
의 성과와 재정상 할 수 있도록 회계	) ① 공사는 사업 내를 명백하게 파악  거래를 발생의 사  키준에 의하여 <u>계</u>	제25조 ( <u>회계처리</u> ) ① 

현 행	개 정 안
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하여 <u>계리</u>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 은 공사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.	
제26조 (손익금의 처리)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 에는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. 1.·2. (생략) 3. 부채상환,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 립 ② (생략)	
제34조 (감독) ① (생략) ②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1.~3. (생략) 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 1.~3. (현행과 같음)

##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<ul> <li>□ 지방공기업법</li> <li>○ 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</li> <li>○ 제59조(임기 및 직무)</li> <li>○ 제67조(손익금의 처리)</li> <li>□ 지방공기업법 시행령</li> <li>○ 제56조의3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</li> <li>○ 제61조(이익금의 처리)</li> <li>"별 첨"</li> </ul>
관련법규 정비대상	"해당사항 없음"
관련자료	"해당사항 없음"

###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### □ 지방공기업법

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(상임이사 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) 및 감사로 하며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-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임면한다. 다만,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임원추천위원회"라 한다)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다만,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1.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
- 2.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
- 3.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
-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이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.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.

- 제59조(임기 및 직무) ① 공사의 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공사의 사장・이사 및 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
  - ③ 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.
- 제67조(손익금의 처리) ①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, 이를 적립한 후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고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.
  - ②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,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.

### □ 지방공기업법 시행령

- 제56조의3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① 법 제5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. 다만,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.
  - 1.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
  - 2.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
  - 3.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
  - ②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  -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  - 1. 경영전문가
  - 2. 경제관련단체의 임원

- 3.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
- 4. 공인회계사
- 5.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④ 공사의 임·직원(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)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수 없다.
- 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추천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- ⑦ 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
-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.
- 제61조(이익금의 처리) ①공사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,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며,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·사업준비등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 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하는 때에는 법 제53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외의 출자자에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배당할 수 있다.